##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71

발의연월일: 2022. 8. 30.

발 의 자:김선교·태영호·조수진

조경태 · 박 진 · 권성동

서일준 · 이종배 · 김상훈

윤상현 • 조은희 • 양금희

이철규 · 김정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서 순찰, 방역, 청소 등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등.)

###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영자는"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한 경우.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단서에 따라서 쵤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공지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7항 중 "제27조부터"를 "제25조의2, 제27조부터"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제7호의3 및 제7호의4로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7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 의 영상을 촬영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영상정보처리기기"</u> 란 일정	7.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	
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	
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u>&lt;신 설&gt;</u>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
	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
	(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
	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u>의</u> 설치·운영 제한) ①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개된 장소에 <u>영상정보처리기기</u> 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 5. (생략)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u>영상정</u>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u>영상정보처리기기를</u>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u>영상정</u>

고정형 영
<u> </u>
1. ~ 5. (현행과 같음)
2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르 <u>=</u>
,
③ <u>고정형</u>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④ <u>고정형</u>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 략)

- ⑤ <u>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u> <u>영상정보처리기기의</u>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u>영상정보처</u> 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영상정보
<u>처리기기운영자</u>
1. ~ 4. (현행과 같음)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u>기의</u>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u>영자는</u>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있다.
-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u>영자는</u>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7]
_ <del></del>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 -
<u> </u>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업 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 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정보주체 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개인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 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 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 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단서에 따라서 쵤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공지해야 한다.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저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생략)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
    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생략)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u>영상정보처리기</u> 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 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 ③・④ (생 략)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u>(5)</u>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1
<u>규정</u>	]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	<u>}</u>
<u>정보</u>	L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 <b>ං</b>	1
느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
의 -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E(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3
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현	1
행과	구 같음)	
7		_
	제25조의2, 저	1
27조	<u> </u>	_
		_
제58조	도(적용의 일부 제외) ① (현	1
행괴	구 같음)	
2		_
	<u>고정형 영상정</u>	<u>3</u>
<u>보처</u>	리기기를	_
		_
		_
		_
<b>③</b>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	(벌칙)	-
		_

- 의 벌금에 처한다.

#### 2. · 3.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u>영</u> <u>상정보처리기기를</u> 설치·운영 한 자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

<u>.</u>
1 <u>J</u>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u>J</u>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3.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u>.</u>
1.•2. (현행과 같음)
3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2
1. ~ 6. (현행과 같음)
7 <u>J</u>

<u>상정보처리기기를</u> 설치·운영 <u>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u>----한 자

<신 설>

<u>7의2.</u>·<u>7의3.</u> (생략)

8. ~ 13. (생략)

③ ~ ⑤ (생 략)

7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 런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7의3. • 7의4. (현행 제7호의2 및 제7호의3과 같음)

8.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